

유해화학물질 관리, 앞으로 체계화 · 선진화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마련 - 발암성 물질 정보 제공 확대

앞으로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화학물질이나 기존에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해성 ·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10. 10월)하고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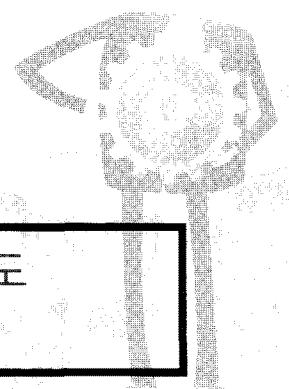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4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 · 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화학물질 유해성 · 위험성 평가체계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될 방침이다.

한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가 확대되어 노 · 사에게 알기 쉽게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를 개정(‘11.3.2)하여 현행 58종에 대한 발암성 등급 표시를 184종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며, 이는 외국 주요기관의 발암성 등급을 근거로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른 것이다.



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 종사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앞으로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 2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시행일: 공포일부터)을 공포하였다.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염화비닐이나 벤젠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하게 된다. ☺